

‘만 나이 통일법’ 시행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
등 일괄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23-115
--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3. 8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의결주문

‘만 나이 통일법’ 시행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‘만 나이 통일법’(민법 및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)의 시행 등 각종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구 자치법규 중 각종 나이 표시 및 기타 인용 법조문을 정비하여 만 나이 정착에 기여하고 행정 입법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나이 규정에서 “만” 표시 삭제 (안 제1조 ~ 제10조)

나. 인용 법조문 조항번호 등을 상위법령 제·개정 및 폐지 사항에 맞게 정비 (안 제11조 ~ 제18조)

4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행정기본법」, 「민법」 등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 : 2023. 7. 13. ~ 8. 2. (제출의견 없음)

2)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사전심사 검토결과 : 원안 동의

3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: 해당 없음

4)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: 해당 없음

‘만 나이 통일법’ 시행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등 일괄개정조례안

제1조(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8조제1항 중 “만 100세”를 “100세”로 한다.

제2조(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1호 중 “만65세”를 “65세”로 한다.

제3조(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1호 중 “만60세”를 “60세”로 한다. 제3조제1항제1호 중 “만75세”를 “75세”로 한다.

제4조(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·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·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1호 중 “만13세”를 “13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만13세 이상 만 18세”를 “13세 이상 18세”로 한다.

제5조(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」의 개정)
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만9세 이상 만24세”를 “9세 이상 24세”로 한다.

제6조(「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
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제2호바목 중 “만 18세”를 “18세”로 한다.

별표 2 비고란의 “만 19세”를 “19세”로 하고, “만13세 ~ 만18세 ”를 “13세 ~ 18세”로 하고, “만 12세”를 “12세”로 한다.

제7조(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마포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7호 중 “만 18세 이하”를 “18세 이하”로, “만 18세를”을 “18세를”로 한다.

제8조(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1조제1호 중 “만8세”를 “8세”로 한다.

제9조(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조 중 “만 65세”를 “65세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만 65세”를 “65세”로 한다.

제10조(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7호 중 “만 65세”를 “65세”로 한다.

제11조(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45조”를 “「행정절차법」 제52조의2”로 한다.

제12조(「서울특별시마포구인사위원회비용지급에관한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마포구인사위원회비용지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공무원법 제7조제6항”을 “「지방공무원법」 제7조제8항”으로 한다.

제13조(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「기초노령연금법」”을 “「기초연금법」”으로 한다.

제14조(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”을 “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”으로 한다.

제15조(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조 중 “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제11조제6항”을 “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」 제11조제8항”으로 한다.

제16조(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16조의2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30조”로 한다.

제17조(「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기본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3조제1항 중 “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”을 “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12조제3항”으로 한다.

제18조(「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」의 개정)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조 중 “도로법시행령 별표1 제4호”를 “「도로법 시행령」 별표2제4호나목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도로법 제14조”를 “「도로법」 제14조”로, “제17조2”를 “제18조”로 한다.
제7조 중 “환경·교통·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8조”를 “「도시교통정비촉진법」 제26조”로 한다.

제11조 중 “도로법 제84조 제4호”를 “「도로법」 제117조제2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1. 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효행 지원 등) ① 구청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<u>만 100세</u> 이상의 노인의 부양자를 대상으로 표창을 수여하거나 격려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 략)</p>	<p>제8조(효행 지원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 <u>100세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2.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노인”이란 <u>만65세</u>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.</p> <p>2. · 3. (생 략)</p>	<p>제2조(용어의 정의) ----- ----- ---.</p> <p>1. ----- <u>65세</u> ----- -----.</p> <p>2. · 3. (현행과 같음)</p>

3.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노인”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고 있는 <u>만60세</u>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.</p> <p>2.·3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 <u>60세</u> -----.</p> <p>2.·3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조(지원대상)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(이하 ‘구청장’이라 한다)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노인 중 <u>만75세</u> 이상의 사람</p> <p>2.·3. (생략)</p> <p>②·③ (생략)</p>	<p>제3조(지원대상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.</p> <p>1. ----- <u>75세</u> -----</p> <p>2.·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

4.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·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어린이의회”란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 거주하고 있는 <u>만13세</u> 미만의 아동이거나,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(이하 “구의회”라 한다)에서 구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참여기구를 말한다.</p> <p>2. “청소년의회”란 구에 거주하는 <u>만13세 이상 만18세</u> 미만의 청소년이거나, 관내 중·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구의회에서 구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참여기구를 말한다.</p> <p>3.·4. (생략)</p>	<p>제2조(용어의 정의) ----- ----- 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 <u>13세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2. ----- -- <u>13세 이상 18세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3.·4. (현행과 같음)</p>

5. 서울특별시 마포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여성청소년”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<u>만9세 이상 만24세</u>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.</p> <p>2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 <u>9세 이상 24세</u> ----- -----.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

6.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

현행	개정안
<p>제11조(사용료 등의 감면 및 할증)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개인사용료 및 수강료의 100분의 50 감면, 이 경우 감면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만 적용한다.</p> <p>가. ~ 마. (생략)</p> <p>바. 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<u>만 18세</u>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</p> <p>사. ~ 파. (생략)</p> <p>3.·4. (생략)</p> <p>② ~ ⑦ (생략)</p>	<p>제11조(사용료 등의 감면 및 할증) ① ----- ----- ----- 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가. ~ 마. (현행과 같음)</p> <p>바. ----- ----- <u>18세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사. ~ 파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·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⑦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

[별표 2]

개인사용료의 범위(제8조 관련)

(단위 : 원)

명칭	구분	대상	사용료	비고
영리성공 체육관	종합 체육관	성인	2,000 - 4,000	* 사용료 기준 - 1회 2시간 - 필사용권은 1회 사용료에 20%를 곱한 금액 한도 내로 함
		청소년	1,500 - 3,000	
		어린이	1,000 - 2,500	
마포구민 체육센터	종합 체육관, 다목적 스포체육관	성인	2,000 - 4,000	* 성 인 만 19세 이상 청소년 만13세 - 만18세 어린이 만7세 이하
		청소년	1,500 - 3,000	
		어린이	1,000 - 2,500	
	헬스강	성인	2,000 - 4,000	* 개인사용함 특대 : 7,000원 대 : 5,000원 중 : 3,000원 소 : 2,000원
		청소년	1,500 - 3,000	
		어린이	2,000 - 4,000	
망월나눔목 체육관	종합 체육관	성인	2,000 - 4,000	* 물량화 대여 : 1,000원
		청소년	1,500 - 3,000	
		어린이	1,000 - 2,500	
	헬스강	성인	2,000 - 4,000	* 성산 당구장은 프로그램 회원인 경우에 한하여 개인사용 가능
청소년	1,500 - 3,000			
와우산 배드민턴장			2,000 - 4,000	
망월나눔목 테니스장				
망월유수지 소프트테니스장 <신설, 2021.12.30>			10,000 - 18,000	* 망월나눔목 테니스장, 망월유수지 소프트테니스장 사용료 기준 <개정 2021.12.30> - 1면 2시간
성산 당구장		성인	4,000 - 7,000	
		청소년	3,000 - 6,000	

1. 이용자가 허가받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때 초과시간에 대하여 주권에는 1시간 사용료의 10%를, 야간에는 1시간 사용료의 30%를 가산하며,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.
2. 와우산 배드민턴장은 냉난방시설, 샤워실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을 설치·보관할 때까지 사용료를 면제한다.
3. 구에서 관리·운영하는 성미산체육관 등 기타 체육시설은 위와 유사한 체육시설을 준용한다.

개 정 안

[별표 2]

개인사용료의 범위(제8조 관련)

(단위 : 원)

명칭	구분	대상	사용료	비고
영리성공 체육관	종합 체육관	성인	2,000 - 4,000	* 사용료 기준 - 1회 2시간 - 필사용권은 1회 사용료에 20%를 곱한 금액 한도 내로 함
		청소년	1,500 - 3,000	
		어린이	1,000 - 2,500	
마포구민 체육센터	종합 체육관, 다목적 스포체육관	성인	2,000 - 4,000	* 성 인 19세 이상 청소년 13세 - 18세 어린이 12세 이하
		청소년	1,500 - 3,000	
		어린이	1,000 - 2,500	
	헬스강	성인	2,000 - 4,000	* 개인사용함 특대 : 7,000원 대 : 5,000원 중 : 3,000원 소 : 2,000원
		청소년	1,500 - 3,000	
		어린이	2,000 - 4,000	
망월나눔목 체육관	종합 체육관	성인	2,000 - 4,000	* 물량화 대여 : 1,000원
		청소년	1,500 - 3,000	
		어린이	1,000 - 2,500	
	헬스강	성인	2,000 - 4,000	* 성산 당구장은 프로그램 회원인 경우에 한하여 개인사용 가능
청소년	1,500 - 3,000			
와우산 배드민턴장			2,000 - 4,000	
망월나눔목 테니스장				
망월유수지 소프트테니스장 <신설, 2021.12.30>			10,000 - 18,000	* 망월나눔목 테니스장, 망월유수지 소프트테니스장 사용료 기준 <개정 2021.12.30> - 1면 2시간
성산 당구장		성인	4,000 - 7,000	
		청소년	3,000 - 6,000	

1. 이용자가 허가받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때 초과시간에 대하여 주권에는 1시간 사용료의 10%를, 야간에는 1시간 사용료의 30%를 가산하며,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.
2. 와우산 배드민턴장은 냉난방시설, 샤워실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을 설치·보관할 때까지 사용료를 면제한다.
3. 구에서 관리·운영하는 성미산체육관 등 기타 체육시설은 위와 유사한 체육시설을 준용한다.

8.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

현행	개정안
<p>제11조(가사서비스의 지원대상) 제10조에 따라 가사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가정에 가사서비스를 지원 할 수 있다.</p> <p>1. <u>만8세</u> 이하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있을 것</p> <p>2. 3. (생략)</p>	<p>제11조(가사서비스의 지원대상) - ----- ----- ----- ----- --.</p> <p>1. <u>8세</u> ----- -----</p> <p>2. 3. (현행과 같음)</p>

9.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

현행	개정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<u>만 65세</u>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<u>65세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제2조(지원대상)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(이하 “접종”이라 한다)의 지원 대상자는 접종일 기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<u>만 65세</u> 이상으로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하되,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2조(지원대상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65세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10.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

현행	개정안
<p>제3조(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)</p> <p>① 삭제</p> <p>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.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>7.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<u>만 65세</u> 이상인 환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</p> <p>8.·9. (생략)</p>	<p>제3조(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----- ----- <u>65세</u> ----- -----</p> <p>8.·9. (현행과 같음)</p>

11.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 <u>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</u> 」 제45조 및 「 <u>지방공무원법</u> 」 제7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민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공무원의 제안을 구정에 반영하여 구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「 <u>행정절차법</u> 」 제52조의2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12. 서울특별시마포구인사위원회비용지급에관한조례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지방공무원법</u>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 위원 의 비용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「 <u>지방공무원법</u> 」 제7조제8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13.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지원대상자)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3. 「기초노령연금법」에 따른 수급자</p> <p>4. ~ 8. (생략)</p>	<p>제2조(지원대상자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「기초연금법」-----</p> <p>-----</p> <p>4. ~ 8. (현행과 같음)</p>

14.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아동복지법」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</p> <p>-----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</p> <p>시행령 제36조제6항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
16.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

현행	개정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교육환경개선과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제안과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처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116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발전자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130조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17.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기본조례

현 행	개 정 안
<p>제13조(지역 환경기준의 유지) ① 구는 <u>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</u>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조례로 따로 정한 지역 환경 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13조(지역 환경기준의 유지) ① --- 「<u>환경정책기본법</u>」 제12조제3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② (현행과 같음)</p>

18.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관한조례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도로법시행령 별표1 제4호</u>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“도로”라 함은 <u>도로법 제14조</u>의 규정에 의한 “특별시도”, <u>제17조2</u>의 “구도”를 말한다.</p> <p>2. 3. (생략)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<u>도로법시행령</u>」 <u>별표2제4호나목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----- 「<u>도로법</u>」 제14조----- <u>제18조</u>----- 2. 3. (현행과 같음)</p>

제7조(대행자지정)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·교통·재해등에 관한영향평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교통분야 영향평가대행자(이하 “대행자”라 한다)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제11조(위반자에 대한 조치) 구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시행자에게 내린 시정명령을 당해 공사시행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84조 제4호를 적용하여 고발조치하여야 한다.

제7조(대행자지정) -----
----- 「도시교통정비
촉진법」 제26조-----

-----.

제11조(위반자에 대한 조치) ----

----- 「도로법」 제1
17조제2항-----
-----.

‘만 나이 통일법’ 시행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등
일괄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

3. 미첨부 사유

- 비용 추계 대상 아님

4. 작성자 : 새마포담당관 김경민 (☎ 3153-8526)